

| 구분 | 연번 | 권 리 의<br>소 재 지 | 토 지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건 축 물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소유권 이외의 권리 |     |            | 비 고 |       |     |
|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|
|    |    |                | 지목  | 면 적(㎡) |      | 이 용<br>상 황 | 용도<br>지역<br>또는<br>지구 | 소 유 자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도<br>/<br>구조 | 동수/<br>층수(지하/<br>지상) | 연면적 | 소 유 자      |     | 권리의<br>종 류 |     | 권 리 자 |     |
|    |    |                |     | 공부상    | 편입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성 명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성 명        | 주 소 |            |     | 성 명   | 주 소 |
|    |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|
| “  | 17 | 164-29         | 대   | 37.4   | 37.4 | 도로         | 일반상업<br>지역           | 삼성생명보험<br>(주) | 서울특별시 서초구<br>서초대로 74길 11<br>(서초동, 삼성전자<br>서초사옥)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|
| “  | 18 | 164-2          | 대   | 77.0   | 77.0 | 도로         | 일반상업<br>지역           | 삼성생명보험<br>(주) | 서울특별시 서초구<br>서초대로 74길 11<br>(서초동, 삼성전자<br>서초사옥)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|
| “  | 19 | 164-31         | 대   | 71.3   | 71.3 | 도로         | 일반상업<br>지역           | 삼성생명보험<br>(주) | 서울특별시 서초구<br>서초대로 74길 11<br>(서초동, 삼성전자<br>서초사옥)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|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65호

오장동 등 정비계획 신규수립 4개소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해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7월 16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제한지역

| 연번  | 위 치           | 면적(ha) | 비고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 | 오장동 148-12 일대 | 1.38   |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   |
| 2   | 광희동 34-1 일대   | 1.12   |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   |
| 3   | 주교동 125-2 일대  | 0.8    | 주교동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|
| 4   | 충무로 43 일대     | 1.92   | 충무로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|
| 소 계 |               | 5.21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2. 제한근거 및 사유

- 가. 제한근거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
나. 제한사유 :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 방지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함

3. 제한대상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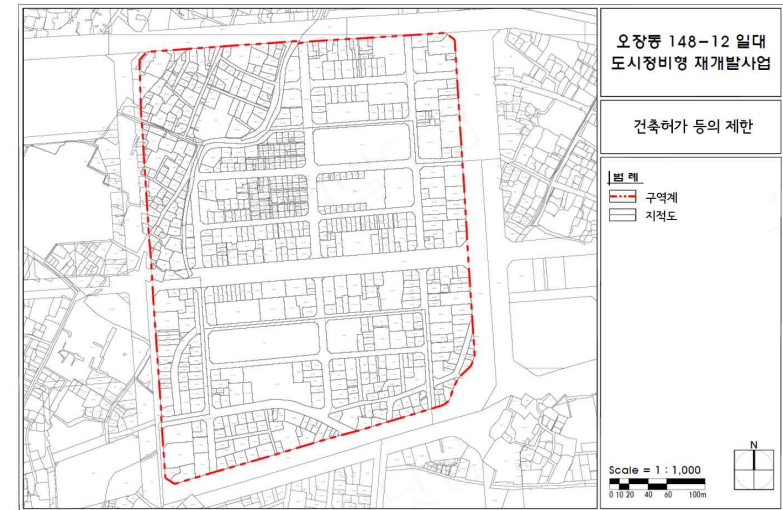
- 가. 건축물의 건축 등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  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
  -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  -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
  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- 나. 토지분할
- 다.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- ※ 제한 적용 예외
- 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/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
  -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  - 재배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  -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**4. 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각 구역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까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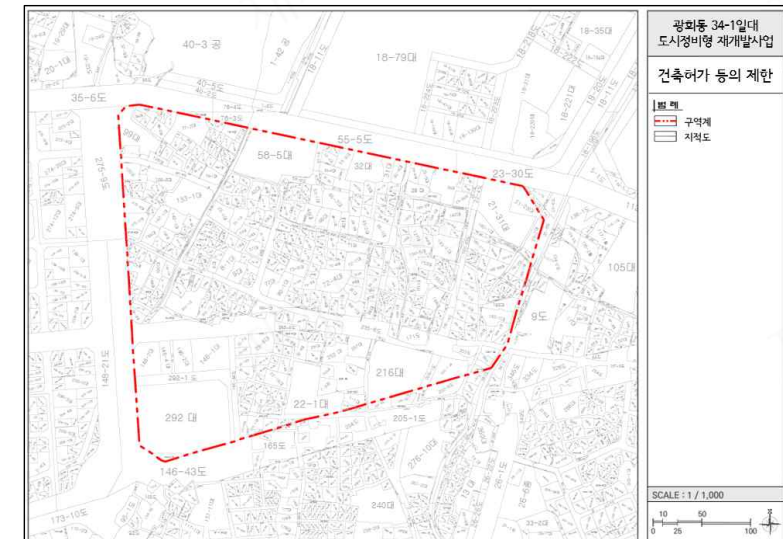
- ※ 고시일로부터 최대 3년(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)
- ※ 제한기간 내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될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효력 발생

**5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****■ 붙임**

- 오장동 148-12 일대



- 광희동 34-1 일대



- 주교동 125-2 일대